

국 무 조 정 실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전화(02)3703-2157~60 /전송 732-7155
 규제개혁1심의관실 과장 권충식 담당사무관 정현용

문서번호 국무규제 05090-664
 시행일자 1998.11.21(보존연한: /년)

받 음 수신처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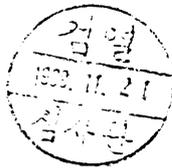
참 조

취급		국무조정실장	국 무 총 리
보존	년		
조정관	김덕봉	정현용	권충식
심의관	정현용		
과 장	권충식	기획심의관	권
기안자	정 현 용		협조

제 목 「'99년도 규제정비지침」 시달(국무총리지시 1998-30 호)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에 의거 정부가 1999년도에 추진할 규제정비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각부처에서는 동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바랍니다.

첨부 '99년도 규제정비지침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 31 - 47, 가 15-16, 가 19-20, 가 52-55, 가 57-67

1

國務總理指示
第1998-30號

'99年度 規制 整備 指針

'98. 11

國 務 調 整 室



< 目 次 >

○ 規制改革關聯 大統領 指示事項

I. '99 規制改革의 基本方向

II. '99年度 重點 規制改革 推進分野

1. 規制整備成果의 早速한 擴散·定着
2. 不正腐敗防止를 위한 規制改革
3. 地方自治團體의 規制改革

III. '99年度 核心課題 推進指針

IV. 效率的인 規制管理를 위한 戰略

1. 新設規制의 嚴格한 審査
2. 既存規制 整備狀況 事後管理
3. 規制管理시스템의 定着
4. 弘報 및 教育活動 強化
5. OECD 規制審査 準備

V. 行政事項



'98.11.10 第52回 國務會議時 規制改革關聯 大統領 指示事項

(국무조정실장 『'98규제개혁실적 및 '99규제정비지침 보고』 후)

- 이번에 5,000여건의 규제를 한꺼번에 폐지하기로 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있는 획기적인 일이며, 국민의 정부의 큰 업적임

- 이번 조치로 공무원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어지고, 국민들과 외국인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 미흡한 분야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여 그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주기 바람

- 아쉬운 것은 이와 같은 개혁내용의 본질이 언론에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것이며, 우리의 홍보노력이 부족했던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봄

- 국민들을 위한 홍보책자의 발간은 물론 관계자가 TV에 직접 출연하여 설명하거나, 신문에 광고를 실는 방안 등 충분한 홍보노력을 전개하여 규제개혁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I. '99 規制改革의 基本方向

- '99年 上半期까지 未洽한 分野에 대한 規制改革 追加完了
- 既存 規制의 大幅 撤廢에 따른 改革成果의 擴散·定着과 함께 補完對策을 강구

□ 民間의 自律과 創意의 極大化

-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
- 민간의 자율역량 강화
-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사후감시기능은 강화

□ 不正腐敗의 防止를 위한 規制改革

- 규제 투명성·객관성 확보

□ 規制의 品質 向上

- 규제수단과 방법의 합리화
- 규제의 유효성 확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

<既存規制의 整備原則>

□ 競争制限 및 企業活動關聯規制 持續 整備

- 진입·가격규제 등 기업활동관련 규제 철폐

□ 事前規制의 과감한 廢止와 事後管理의 強化

-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 행정편의적 규제의 폐지

□ 重複法令의 統合 整備

- 동일 목적의 중복규제 및 다수부처 관련규제의 정비

□ 規制의 透明性·客觀性 提高

- 인·허가 등을 준칙주의로 전환, 요건 투명화
- 법령미근거규제의 지속 발굴·정비

□ 規制의 手段과 方法의 合理化

- 준수율이 낮은 규제의 원칙폐지 또는 다른 정책수단의 강구

II. '99年度 重點 規制改革 推進分野

1. 規制整備成果의 早速한 擴散・定着

□ 規制改革 關聯 下位法規 整備의 早期 完了 (각부처)

- 법령정비 이후 고시·공고·훈령·예규 등 관련 하위법규의 조속 정비

- 고시 등에 의한 기존규제 정비의 조기 마무리

☞ 시행시기 : '99년 2월말까지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규칙도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

□ 一線行政機關의 規制執行方式 改善 (각부처)

-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지수 향상을 위한 일선행정기관의 규제집행방식 개선대책 강구

- 기관별로 규제개혁성과에 대한 국민들(수요자)의 만족도를 정례평가

- 여론조사, 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의견수렴 등으로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규제개혁 과제에 반영

☞ 시행시기 : '99년 4월말까지 결과를 규개위에 제출

2. 不正腐敗 防止를 위한 規制改革

□ 重點對象 分野

- 건축, 소방, 토지이용, 위생, 보건, 환경, 교통, 공사·구매 계약 등 비리발생의 소지가 많은 분야

□ 推進方向

- '99 정비계획시 「존치 및 개선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존치가 불가피한 규제는 품질향상으로 비리요인 제거
 - 존치필요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하고 대신 비규제방안을 강구하여 행정목적 달성
- 서울특별시 등 규제집행 및 단속기능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 발굴

□ 細部實踐計劃

檢討對象

- 인·허가 관련 승인, 지정, 추천 관련 규제
- 검사, 조사, 감독, 단속, 시험, 시정·개선조치, 특정행위 제한관련 규제
-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비리관련 규제

規制整備方案 (例示)

① 단속과 관련한 규제내용이 주관적이거나 불투명 ⇒ 객관화, 명확화

(예)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우수식품업소 기준), 선정적인
광고물(만화대여업소 준수사항) 등

② 비현실적 기준 ⇒ 현실화

(예) 건축법상 안전과 무관한 각종 설비기준, 환경배출기준중 일부

③ 이행준수율이 낮아 규제로서의 기능이 미미한 규제

⇒ 규제를 폐지하고 행정목적 달성할 대체방안강구

④ 행정처분의 지연억제방안을 각 개별법 입법조치 강구

⇒ 협의·동의권은 일정시한까지 의사표시를 안하면 협의·동
의된 것으로 간주

⇒ 등록·신고는 객관적 자료에 의거 요건을 갖추면 즉시 수리
하고 필요시 사후 보완요청 또는 사실확인

⇒ 허가는 처리기한내 미처리시 그 사유 및 향후 처리일정을
통보의무화

⑤ 법령 미근거 규제

⇒ 즉시 폐지하고 규제집행 관계자 문책

3. 地方自治團體의 規制改革

<行政規制基本法 第3條第③項>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 조례·규칙의 조기정비

조기 정비 필요성

- 규제와 관련된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은 '98년말까지 개정
-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규칙 등이 근거가 없어지거나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사례방지 필요

추진 일정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규칙 정비작업 완료
- '99.3월 말한
- ※ 필요시 조례·규칙의 조속한 개·폐지를 위하여 분야별로 일괄상정
- 관계부처별로 조례·규칙 정비대상 내용 시달

조례·규칙 정비 방안

- 시·도별 조례, 규칙 제·개정 작업이 필요한 법령 목록작성 및 코드화

- 중앙부처

- ① 조례·규칙 제·개정 작업필요 법령 목록작성 및 코드화
- ② 시·도에 구체적인 조례·규칙 제·개정작업 지시
- ③ 작업추진상황 수시 점검
- ④ 조례·규칙 제·개정 완료여부 확인

* 행정자치부(교육부)에서 자료 취합

- 자치단체

- ① 총괄부서에서 각 실·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개정 작업 확인·점검
- ② 작업완료후 각 실·국별로 소관 중앙부처에 결과보고
- ③ 총괄부서에서는 총체적으로 취합, 행정자치부(교육부)에 보고

□ One-Stop-Service 체제 구축

체제 구축의 필요성

- 각종 규제 철폐에 따라 인·허가제의 폐지·변경, 기존 복합민원처리지침과 첨부서류 등의 개정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기존 one-stop-service체제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 대두

체제 구축방안

- 기존 복합민원처리지침과 첨부서류의 전면적 재검토, 재정비
 -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의 과감한 단축·폐지
 - 새로이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발굴과 처리지침 제정·시행
- ※ 행정자치부(교육부)에서는 one-stop-service체제 구축에 필요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종합·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의 전 행정력을 집중 투입

Ⅲ. '99年度 核心課題 推進 指針

- '99년 추진예정인 핵심과제는 대통령의 조기개혁 방침에 따라 다음 일정에 따라 추진
 - '98.12월말까지 핵심과제별 주관부서는 해당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추진팀 구성, 추진일정 등 구체적 계획 수립
 - '99년 2월말까지 핵심과제별 개선방안 마련, 규개위에 제출
 - '99년 6월말까지 규개위에서 규제개혁방안 심의·확정

□ 핵심과제별 주관부서

※ 핵심과제는 '98정비계획 성과분석에 따라 수시추가 가능

핵심과제명	주관부서
①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가요건의 투명화·객관화 ○ 인가제를 등록제로 추가 확대 ○ 설립자본금 요건 완화 	재정경제부
② 기업의 준조세 관련 규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준조세를 조세로 전환 ○ 일부 부담금 통폐합 	재정경제부 (조세연구원)
③ 자동차운수사업 관련 규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운수사업 등록기준 완화 ○ 택시면허제도의 개선 	건설교통부

핵심 과제 명	주 관 부 서
<p>④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축소 ○ 풍치지구 등 행위제한 규제 완화 <p>⑤ 주택공급의 자율성 확대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유형, 규모, 시설기준 완화 	<p>건설교통부</p> <p style="text-align: center;">"</p>
<p>⑥ 산업단지 개발·사용절차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지정·개발권한 이양 확대 ○ 산업단지 지정 협의·변경 절차 간소화 <p>⑦ 가스산업관련 규제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도매사업 경쟁체제 도입 ○ 가스산업의 구조개선 방안 	<p>산업자원부</p> <p style="text-align: center;">"</p>
<p>⑧ 산업안전검사 관련 중복규제 정비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서 등 정비 ○ 안전검사주기의 일원화 <p>⑨ 자격법 관련 중복규제 및 각종 자격기준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 통합 검토 ○ 수요자 중심의 전문자격증 교육 실시 	<p>노동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노동부·교육부</p>
<p>⑩ 농림업관련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자재산업관련 규제완화 ○ 농업토목사업, 농촌지도사업 등 농업관련 서비스 부문에 민간 참여 	<p>농림부</p>

핵심과제명	주관부서
<p>⑪ 해운항만분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노무인력 공급독점 등 개선 <p>⑫ 선원법상의 고용규제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선원 확보비율 개선 ○ 외국인선원 고용기준 완화 	<p>해양수산부</p> <p style="text-align: center;">"</p>
<p>⑬ 각종 증명민원제도 규제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필서명 확대를 통해 인감증명 이용의 대폭 축소 ○ 행정기관간 협조를 통해 증명민원 최소화 <p>⑭ 소방행정관련 규제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관련 법령체계 재검토 ○ 화재보험과 소방점검 연계방안 강구 ○ 소방기계·기구에 대한 검정절차 간소화 	<p>행정자치부</p> <p style="text-align: center;">"</p>
<p>⑮ 학원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제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시설기준 합리적 조정 ○ 학원설치지역제한 조정 	<p>교육부</p>
<p>⑯ 의료행정관련 규제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진료제도 개선 ○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p>보건복지부</p>

핵심과제명	주관부서
<p>⑰ 폐기물 재활용관련 규제합리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사업자단체를 활용한 재활용 추진방안 ○ 폐기물 부담금 또는 예치금 부과방식 및 품목조정 	<p>환경부</p>
<p>⑱ 저작권 행사관련 규제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신탁관리업 진입제한 완화 ○ 저작권 이용관련 규제개선 	<p>문화관광부</p>
<p>⑲ 형식승인제도 규제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승인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과도한 샘플 추출등 비합리적 규제개선 <p>⑳ 수출입관련 경쟁제한제도 규제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조절 등 규제완화 ○ 수출입 관련 사업자단체 규제완화 	<p>공정거래위원회 · 중소기업청</p> <p>공정거래위원회</p>
<p>㉑ 수출주종 산업분야별 중점규제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제철,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분야 <p>㉒ 주요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혁방안 및 규제 개혁효과 분석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유통, 회계, 광공업 분야 	<p>규제개혁위원회</p> <p>"</p>

핵심과제명	주관부서
㉓ 산업별 중장기 규제개혁방안 연구 ◦ 보건복지, 농림, 환경, 해양수산	규제개혁위원회
㉔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 ◦ 전문자격사 진입제한 완화 ◦ 전문자격관련업 대표 자격제한 완화	"
㉕ 규제영향평가 지침의 시행 및 보완 ◦ 실무에 적용 가능한 규제영향 평가지침의 마련	"
㉖ 국내기업 역차별 관련 규제개혁 ◦ 국내기업 역차별 사례 발굴·개선	"
㉗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강화 ◦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제도 개선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회계정보 공개	"
㉘ 정보통신공사관련 제도 합리화 ◦ 정보통신공사사업 시공범위 개선 ◦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 합리화	"

IV. 效率的인 規制管理를 위한 戰略

1. 新設規制의 嚴格한 審査

□ 部處 自體審査機能의 強化

- 부처자체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추진기구에 외부 민간 전문가 및 개혁적인 인사 대폭 보장
 - 과반수 이상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공정회나 입법예고 이전에 법령안 작성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사무국 직원과 사전실무협의

□ 規制影響分析制度(RIA)의 發展

-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과학적·객관적인 검증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신설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유도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경제적 분석부분(비용·편익 분석부분)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개발
- 내실있는 규제영향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정한 KDI·KIET등 54개의 『규제개혁 전문 연구기관』 적극 활용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참여한 실·국장, 과장, 담당자 등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명기

□ 市場親和的 規制代案의 적극 導入

- 정부는 규제의 목표만 설정하고 달성수단 선택에 대하여는 신축성을 부여
 - 규제의 하향평준화를 방지하고, 피규제자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수단선택 및 기술혁신의 유인을 제공
-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고품질 규제수단과 비규제적 수단의 개발을 적극 유도

□ 規制日沒制의 擴大實施

- 신설·강화규제 심사시 규제일몰제의 적용을 대폭 확대
- 일정기간 규제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규제의 존속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는 방식 적극 활용

2. 既存規制 整備狀況 事後管理

□ 「'98既存規制 整備計劃」履行實態 點檢

- 各급 행정기관의 '98년도 기존규제 정비계획확정에 따른 법령 개정작업등 후속조치이행 및 규제운영 실태등을 점검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확산 및 각기관의 관심 제고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 주요점검사항

- 계획대비 정비추진실적 (규제별, 법령별)
- 규제개혁추진단 운영실태
- 부처에 접수된 규제관련 민원 등의 처리실적
- 규제관련 홍보 실적
- 규제등록의 적정성
- 규제영향분석의 활용도
- 법령미근거 행정규제 정비실적(별도 계획에 따라 시행)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정비내용 전파 여부 등

○ 점검 시기 및 행정사항

- 점검시기 : '99년 1/4분기중 (감사원 등과 합동추진)
- 세부점검사항 및 시기 등에 관하여 사전에 대상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 점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조치 강구

□ 「法令未根據 規制」整備・運用 狀況 確認

목적 및 정비대상

- 규제 법정주의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불편 해소
- 훈령, 지침, 규정, 지시 등 하위규정에 의한 행정규제 중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

「'98년도 정비추진 계획」 이행실태 확인

- '98.4.14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각급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정비 실태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 실시('99. 1/4분기중)
 - * 현장점검시 필요한 각급기관의 추진상황 관련자료를 사전 수합 ('98.11.18 공문시행)
- 점검결과, 부진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 후속조치 독려 및 폐지규제 운용시 관련자 문책 등 조치 강구
- 법령 미근거 정비사태를 각급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기폐지한 규제가 운용되지 않도록 시행
 -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 특정 자치단체에서 발굴한 미근거 규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 일제 정비

법령 미근거 규제 지속적 발굴·정비

- 규제신고센터 건의사항, 민원제기 사항, 언론의 독자 투고 등 중심으로 법령 미근거 규제 운영사례 지속 발굴 및 정비

□ 機關別 實績評價 反映 및 公務員에 대한 인센티브 賦與

- 부처청별 기관평가지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주요 평가대상에 포함
- 규제개혁과제 추가발굴 공무원에 대한 우수공무원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 인센티브 부여

3. 規制管理시스템의 定着

□ 「成果指向 規制整備制度」의 적극活用

- 규제개혁의 성과 또는 지향하는 목표를 미리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관련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
 - 예 : 선박입출항관련 규제정비시 「일정 소요시간내 제반 절차완료」를 정비목표로 설정하고, 통관·입출항·출입국 등 관련 규제를 일괄정비하는 방식
- 특히, 다수의 법령과 여러 부처가 얽힌 복합규제, 국민생활불편을 야기하거나 경제계·시민단체 등 각계로부터 개혁요구가 집중되는 과제에 우선 적용 추진

□ 「벤치마킹制度」의 適用 推進

도입배경

- 국내 규제수준이 선진국가들에 비해 과다한 경우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정비할 필요
- 각 분야의 다양한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이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제도장치의 역할 수행

추진방안

- 국내 규제수준이 선진국가들에 비해 과다하거나 불합리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비
 - 국·내외 기업은 물론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이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직권으로 정비 대상과제 선정
- 규제의 신설·강화를 추진하는 기관은 선진국가들의 규제 수준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함
 - 외국제도의 존재여부는 물론 도입배경, 주요 변천과정, 변천 내용 및 사유, 규제수준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필수요건화함

□ 規制登録 및 電算化로 「規制總量制」 運用

- 각 부처 소관규제의 등록·전산화 작업으로 규제의 부처별, 규제 유형별, 근거 법령별 총량을 종합적으로 관리
 - 소관기관별, 대상분야별, 규제 성질별 등의 구분에 의한 규제총량 및 규제유형 등을 신속하게 확인·비교
 - 부처별 규제신설시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의 감축 및 부처별 규제 변동상황 분석·공표
- '99. 1. 1일부터 '98.12.31 현재의 규제총량을 유지관리
 - 각 부처는 규제 신설시 기존 규제중 동일규제량 이상을 감축 병행
- 미등록 규제 발견시 최우선 철폐 추진
 - 누락규제에 대한 추가등록 검토

□ 「規制 遵守率 確保義務制度」 導入

- 비현실적인 규제의 정비 및 신설억제를 위해 일정수준이상의 규제준수율 확보 여부를 확인
- 소관규제의 준수율이 일정수준이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집행부서가 규제폐지 또는 준수율 제고방안을 강구

4. 弘報 및 教育活動 強化

□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 국민들에게 국민의 정부의 서비스가 달라지는 점을 부각
- ◆ 국민들과 외국인의 활동에 도움이 되고 편리해진 점을 올바르게 알리는데 역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각 부처는 규제개혁의 결과를 신문·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홍보 실시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언론과 협조, 특집프로그램·기획물 등 추진

각 부처별 홍보자료 발간

- 각 부처별 소관계층을 대상으로 알기쉬운 팜플렛, 리플렛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
- 부처 및 산하기관 홍보지(월간,계간 등)에 규제개혁 관련사항 게재

대외홍보 강화

- 외국 관련분야의 규제개혁 영문자료를 제작, 외국기관·단체 등에 배포
- 부처별 각종 국제회의 등 참석시 회의주제 관련분야의 규제 개혁 홍보로 국가이미지 및 대외신인도 제고

□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

-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의 정규 및 수시(특강 등)과목으로 교육 실시
 -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 도모
 - 특히 간부직 공무원의 교육시 특강 실시
 - 규제개혁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 교육분야

- 규제개혁의 이해(비전, 철학 및 추진전략 등)
- 규제정비지침 및 정비계획 추진
- 규제영향분석(전문교육과정) 등

※ 강사진, 교육내용 관련사항 등은 국무조정실에서 지원

5. OECD 규제심사 준비

□ OECD 규제심사 일정

- '98.11~'99.4 : OECD 규제 설문서에 응답
- '99.6~ : OECD 규제심사팀 방한 활동
- '99.9~'99.12 : 분야별 규제심사 검토회의
- 2000년 상반기 : 규제심사 종합검토회의 및 OECD 각료회의에 보고

□ OECD 규제심사분야 및 소관부처

분 야	OECD 관련 위원회	소 관 부 처
정부의 역량	공공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쟁정책	경쟁정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개발	무역위원회	외교통상부
전기산업	경쟁정책위원회	산업자원부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 규제심사 준비 기획단 구성·운영

- 규제심사 소관부처 담당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
 - 국무조정실(총괄)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담당관.
- 범정부적으로 관련사항을 종합검토·대응하여 일관성 유지

□ 준비작업

- 소관부처 별로 분야별 검토 회의에 참석하여 경험축적 및 정보 공유
- 설문서 및 OECD팀에게 답변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사전 자료준비 철저(영문자료)
 - 예시) 국무조정실 :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용역(영문자료)

V. 行政事項

□ 「'99 規制整備計劃」의 樹立・提出

- 제출시기 : '98. 12월말까지
- 포함사항
 - 기관별 규제정비 기본방향
 - 중점추진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 핵심규제에 대한 추진계획 등
- 작성방식 등 : 『1998년도 규제개혁종합지침』 관련양식 준용

□ 「年次別 整備計劃」의 樹立・提出

- 제출시기 : '99. 1말까지
- 포함사항
 - 2002년 까지 매 1년 단위로 작성
 - 연차별 정비계획 우선 포함대상
 -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
 -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 작성방식 등 : 『1998년도 규제개혁종합지침』 관련양식 준용

□ 「政府의 規制整備 綜合計劃」 樹立・公表

- 위원회는 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99.2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고 국민에게 공표



